

『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 ‘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에 따라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11조)
 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○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조문 정비

- 현행 :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, 제94조
- 개정 : 「지방회계법」 제39조, 제49조

○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 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